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289 상해, 명예훼손
피 고 인 김낙찬(000000-00000000), 운전사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천○○(기소), 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8. 18:00경 익산시 ○길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복도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최○○(여 ○세)과 위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변경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

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 9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가 있다.

2) 먼저,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밀쳐서 벽에 등을 부딪쳤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넘어져 쓰러졌는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상해 경위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의 내용도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 즉, ○○병원이 발급한,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에는 “내원 당일 18:20경 갑작스럽게 쿵 소리와 함께 쓰러진

것을 주변 사람이 발견하여 본원 응급실에 내원함. 과거에도 쓰러진 적 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의증) 뇌진탕”. 상해부위란에는 “특별히 확인되는 상해부위는 없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입·퇴원확인서의 진단명에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흉부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과다환기” 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여부와 무관하게 과호흡 증후군 등 다른 원인으로 쓰러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해자가 쓰러졌을 당시 현장에 있던 관리소장 박○○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충격으로 인한 상해 여부보다는 피해자의 기도 확보 여부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권, 송치결정서 7쪽), 피해자 역시 당시 정신을 잃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며, 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에도 피해자가 과거에 쓰러진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은 이상 이를 뿌리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2. 위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최○○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자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해하고 입주민 폭력으로 고소한 관리소장과 ○○주택 즉시 물러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이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2) 비록, 피고인이 현수막에 '자해' 및 '고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자해하였거나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 이상 이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 _____